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39
------	-----

2019.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30.)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¹⁾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 편성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적정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어(1999.6),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음.
-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출연금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기본 재산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증공급액	16,199	12,416	12,368	13,372	15,000	16,000
(A) 보증잔액	35,407	36,709	37,030	37,971	39,000	40,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661	465	381	397	585	② 485
서울시	344	190	65	48	66	90
정 부	19	0	0	-	0	0
자치구	11	5	6	4	3	4
금융회사 법정출연	90	75	55	43	50	50
금융회사 임의출연 등	197	195	255	302	466	341
당기순손실	377	343	346	228	446(추정)	③ 425
(B) 기본재산	5,820	5,942	5,973	6,150	① 6,289(추정)	④ 6,349
운용배수=(A/B)	6.08	6.18	6.20	6.17	6.20	6.30

※ ④ 기본재산 = ① 전년도 기본재산 + ② 당해연도 출연금 - ③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 보증공급액 : 최근 보증공급 규모 감안 (정부의 보증확대 기초 감안 전년대비 증가 예상)
- 출연금 채널별 예상금액 : 자치구(최근 3개년 평균), 법정출연(준고정액), 임의출연(최근 3개년 평균)
- 당기순손실 : 중기재정계획 고려 (2019년 당기순손실 및 기본재산은 추정재무제표에 따름)

- 그러나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위기나 회사의 수익성 악화 등 대외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출연금에 상응하는 조건 이행 등 부수적인 행정 처리로 본연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기관이자 서울시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재정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3개년 평균 운용배수²⁾인 6.3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9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임.

-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출연규모이며, 금융기관 출연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³⁾.
-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9.7.19.)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은 재단과 같이 전년 대비 10%를 넘는 출연금(전년대비 36.8% 증가)을 출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2)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최대 운용배수는 15배이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로 5~7배를 유지하고 있음.

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임.

-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자료 등을 누락하여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사항에 맞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39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주요사무 :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이한순 (☎2133-5533)

붙 임 :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현황

기관개요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관설립 : 1999. 6월
- 조직현황 : 2부문 2실 5부 2센터 / 4지역본부 18지점 2센터
- 인력현황 : 정원 377명 / 현원 371명 ('19.6.30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소 계	무 기	기간제	
현 원(명)	371	3	298	28	42	80	-	80	451

○ **주요기능**

- 신용보증 :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의 15배)
- 구상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 경영지도 :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전,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19년 예산 : 141,201백만원

- 사업예산(인건비, 재보증료, 예비비 등) : 73,786백만원
- 자본예산(대위변제금, 투자자산 등) : 58,058백만원
- 수탁사업예산(종합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9,357백만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채무보증) 지원

- 이용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종류
 - (채무종류) 대출보증,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 (지원성격) 일반보증, 정책보증(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창업 등)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 ~ 100%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 0.5~2.0%(기준보증료율 : 연 1.0%)
 -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 지원실적 : '99년 설립이후 '19. 6월까지 총 786,043건, 17조 6,206억원

○ 구상권 관리

-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 발생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 추진절차 : 차기년도 구상권 관리계획 수립(서울시, 중기부 사전협의)
 - ⇒ 이사회 의결 ⇒ 서울시 및 정부 사업계획 제출 ⇒ 연중 구상권 관리 지속

○ 기본재산 관리

- 매년 출연금 조성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기반 마련
- 출연금 조성방법

서울시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금융회사 등	법정출연 :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2/1,000 출연
	임의출연 :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정부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시 출연 (햇살론 등)
자치구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2020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20년도 출연금 예산(안) : 90억원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재단 역할 강화와 신용보증 등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출연금 편성

적정 출연규모에 대한 검토

- 그간 서울시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개년 평균
출연금	344	190	65	48	66	143
기본재산	5,820	5,942	5,973	6,150	6,289(추정)	6,034(추정)

○ **운용배수 관리를 위한 적정 출연금 필요**

-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법상 최대한도는 15배이나,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한 여러 연구결과, 5~7배로 제시
<서울시 출연에 따른 운용배수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증공급액	16,199	12,416	12,368	13,372	15,000	16,000
(A) 보증잔액	35,407	36,709	37,030	37,971	39,000	40,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661	465	381	397	585	② 485
서울시	344	190	65	48	66	90
정 부	19	0	0	-	0	0
자치구	11	5	6	4	3	4
금융회사 법정출연	90	75	55	43	50	50
금융회사 임의출연 등	197	195	255	302	466	341
당기순손실	377	343	346	228	446(추정)	③ 425
(B) 기본재산	5,820	5,942	5,973	6,150	① 6,289(추정)	④ 6,349
운용배수=(A/B)	6.08	6.18	6.20	6.17	6.20	6.30

※ ④ 기본재산 = ① 전년도 기본재산 + ② 당해연도 출연금 - ③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 보증공급액 : 최근 보증공급 규모 감안 (정부의 보증확대 기조 감안 전년대비 증가 예상)
- 출연금 채널별 예상금액 : 자치구(최근 3개년 평균), 법정출연(준고정액), 임의출연(최근 3개년 평균)
- 당기순손실 : 중기재정계획 고려 (2019년 당기순손실 및 기본재산은 추정재무제표에 따름)

□ 검토 결과

○ 안정적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균(6.19배) 수준인

6.3배로 관리하기 위하여 **90억원**의 출연금 필요

- 금융회사 임의 출연금의 경우,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및 금융위기 등 대외변수에 따라 축소 및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 市 유일의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수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공공부문 출연 불가피

<출연채널별 출연비중 비교>

(단위: 억원)

출연채널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19.6월말
서울시	194 (33.1%)	344 (52.0%)	190 (40.9%)	65 (17.1%)	48 (12.1%)	53 (11.5%)
자치구	13 (2.2%)	11 (1.7%)	5 (1.1%)	6 (1.6%)	4 (1.0%)	2 (0.4%)
정부	21 (3.6%)	19 (2.9%)	-	-	-	-
금융회사	358 (61.1%)	287 (43.4%)	270 (58.0%)	310 (81.3%)	345 (86.9%)	405 (88.0%)
합계	586	661	465	381	397	460

※ 최근 3개년 기준 금융회사 출연비중 증가